

상조회 규정

2012.12.24. Rev.2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는 '한기검 상조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회는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협조정신의 양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회원의 자격】

본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재직중인 임직원
2. 회원의 자격은 입사일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후 회원으로 가입한다.
단, 퇴사시에는 직위를 상실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은 상실된다.

제 4 조 【회 비】

1.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매월 직원 1만5천원을 회비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전항의 회비는 임금지급일에 회사 관리부서에서 공제 수금한다.
3. 회원이 회사를 퇴직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의 반환은 회비지급 절차에 따른다.

제 5 조 【사 업】

본회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영위한다.

1. 회원 경조시의 부조
2. 기타 본 회 목적을 위하여 도움이 되는 사업

제 6 조 【부조기준】

부조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휴직기간의 회비는 징수하지 않고 부조금 신청시에는 본 규정의 부조금을 지급한다.
2. 부조 지원금은 다음의 표를 따른다.

(단위 : 원)

구분	대상	지원금	구분	대상	지원금
결혼	본인	10,000X회원수	조의	본인	15,000X회원수
	자녀	10,000X회원수		배우자	15,000X회원수
기타	자녀 둘	10,000X회원수		부모 (배우자포함)	10,000X회원수
	본인생일	30,000(상품권)		자녀	5,000X회원수
				조부모	5,000X회원수
				형제/자매	5,000X회원수

3. 경사의 경우 조화 증정을 생략하며, 조사의 경우 4회에 한하여 배우자, 처 부모 및 자녀에 한해서 조화를 증정한다.(1인4회 이상 지급안됨.)

* 본인생일 상품권 지원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문화상품권 3만원 지급)

* 본인생일 상품권 지원은 회원가입 12개월 이상인 회원에게만 지급.

제 7 조 【회비지급 절차】

1. 회원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금액의 한도.
- 회원가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회원 지급사유 없음.

- ✳ - 회원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회원 25% 지급.
- ✳ - 회원가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회원 50% 지급.
- ✳ - 회원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인 회원 100% 지급.
- 2. 회원은 본 회칙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를 첨부하여 간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지급사유 인정여부 및 지급액 확정은 회장 결제로 하고, 본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한 경우에는 상조회장과 간사가 정한다.
- 4. 퇴직시 회비의 반환(회비납부일로부터)
 - 회비납부액 보다 많은 금액을 부조 지원금으로 받은 회원은 지급사유 없음.
 - 1년 미만 : 없음
 - 1년이상 ~ 2년 미만 : 2만원
 - 2년 이상 : 3만원
 - 2년 이상 : 1년 초과시마다 1만5천원씩 가산하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5. 한기검 상조회 예치금의 한도
 - 한기검 상조회 예치금의 한도는 1천만원으로 한다.
 - 1천만원 이상 예치시 결산보고회의에서 전체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금및 선물로 지급토록 한다.
- ✳ 6. 기타 경비의 지급
 - 사무비와 총회비는 회장 및 간사의 협의하에 지출하고 경조사에 대표로 특별 참석할시는 실비를 지급한다.

제 8 조 【상조회의 구성, 의결방법 및 임원의 역할,임기】

상조회는 회장, 간사로 구성되며, 안건에 관한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한다.

상조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상조회 회의를 통해서 선출한다.
2. 회장은 회의를 통리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3. 관리담당 간사는 관리팀 직원으로 하며 회비의 입, 출금 관리 및 결산과 그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4. 회장 및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사항】

1. 회장은 연1회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상조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사업 및 결산보고 (매년 12月末)
2. 회칙 개정 (매년 12月末)
3. 기타사항

제 10 조 【보고 의무】

간사는 정기 총회일에 상조회에 사업 경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상조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조 【결손충당】

회비의 지출 초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회원의 회비를 받아 결손 충당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세칙】

본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이 규정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주) 한국기술검사원 상조회

* 2012년 회장 김평호

* 2012년 총무 문혜선

* 2012년 감사 이상철

* 2012년 감사 김호영

상조회 수입 지출내역

2012년

순 번	입금내역	입금금액	지급내역	지급금액	잔 액	비고
1	1월 회비(42명)	₩630,000	2/20일 부장님 부친상 (1월 회비 적용)	₩520,000	₩110,000	회비:420,000 화환:100,000
2	2월 회비(40명)	₩600,000	3월 왕대리 조모상 (2월 회비 적용)	₩200,000	₩510,000	회비:200,000
3	3월 회비(40명)	₩600,000	4월 박경택 결혼식 축의금 (3월 회비 적용)	₩400,000	₩710,000	회비:400,000
4	4월 회비(41명)	₩615,000	6월24 이상민 자녀들 (5월 회비 적용)	₩410,000	₩915,000	회비:410,000
5	5월 회비(41명)	₩615,000	7/21 하태현 자녀들 (6월 회비 적용)	₩390,000	₩1,140,000	회비:390,000
6	6월 회비(39명)	₩585,000	7/22 이충락 결혼식 축의금 (6월 회비 적용)	₩390,000	₩1,335,000	회비:390,000
7	7월 회비(42명)	₩630,000	9월27일 왕병진 자녀들 (8월 회비 적용)	₩410,000	₩1,555,000	회비:410,000
8	8월 회비(41명)	₩615,000	10월14일 이재일 결혼 축의금 (9월 회비 적용)	₩410,000	₩1,760,000	회비:410,000
9	9월 회비(41명)	₩615,000	11월3일 이병걸 자녀들 (9월 회비 적용)	₩410,000	₩1,965,000	회비:410,000
10	10월 회비(41명)	₩615,000	12월2일 최덕하 결혼 축의금 (10월 회비 적용)	₩410,000	₩2,170,000	회비:410,000
11	잡수익	₩30,000			₩2,200,000	
12	11월 회비(41명)	₩615,000			₩2,815,000	
13	6월이자,9월이자	₩510			₩2,815,510	
14	12월 회비				₩2,815,510	
수입 총 합 계		₩6,765,510	지급 총 합 계	₩ 3,950,000		

12년 12월 24일 현재 잔액 : 2,815,510

김경호

문혜선

이상천

2012
7월
사
회
비